

연안관리정책 소개

상처나고 있는 우리 연안,
함께 되살려 주세요.

연안교육센터 소개

설치목적 및 배경

- 연안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인 연안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교육 홍보 수행 필요
- 정부주도의 연안관리가 아닌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연안발전을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안교육 필요성 증대
 - 지역 NGO, 연안지킴이,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연안교육 홍보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고 연안교육과정 운영

연혁

- 2013.8. : 연안관리법 개정(연안교육센터 지정·운영 근거 조항 신설)
- 2015.4. : 제1호 연안교육센터 지정 ((사)한국연안협회)

주요 활동

- 연안관리 길라잡이 교육 실시 : 2015.6. ~ 2015.12.
- 연안교육 교재 개발(연안관리 길라잡이) : 2015.6. ~ 2015.11.
- UCC공모전 개최 : 2015.9.~2015.12.

연락처

- 홈페이지 : edu.coast.kr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91 신진빌딩 402호
- 전화 : 02-597-2987~8
- 팩스 : 02-598-2989

교육과정 소개

기본과정	4
전문과정	5

프로그램

기본과정	6
전문과정 프로그램	7

연안관리정책 소개

연안이란?	8
연안통합관리의 개념 및 도입배경	8
우리나라 연안통합관리	9
연안통합관리 계획	10
연안관리지역 계획	12
연안용도해역제	14
연안정비 기본계획	16
연안 기본조사	18
연안침식 실태조사	20
연안침식 관리구역	22
바닷가 종합관리 계획	23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25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27



교육과정소개

기본 과정

• 교육과정 소개

교육대상	공무원, 학생, 일반인, 연안지킴이, 관련업계 종사자 등
교육목적	연안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인 연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학생, 일반인, 연안지킴이, 관련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연안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관리제도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공간의 이해 - 연안통합관리계획 - 연안관리 지역계획 ○ 바닷가 현황 및 관리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수면의 개념 - 공유수면 매립과 관리 - 바닷가 관리제도 및 자연해안 관리목표제 - 지속가능한 연안이용을 위한 지킴이 활동 ○ 연안지역 기능 및 가치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정비사업의 이해와 연안의 가치 - 연성해안과 경성해안의 특성과 현황 ○ 연안관리의 나아가야할 방향
기대효과	○ 연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을 통한 핵심 능력의 배양

• 교육 일정 (2015년)

차수	일정	지역	장소
1	8월 19일	부산	해양박물관 회의실
2	8월 20일	울산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회의실
3	9월 2일	경기	안산 해양과학기술원 후생관2층
4	9월 3일	인천	인천항만공사 회의실
5	9월 16일	충남	충남도청
6	9월 17일	전북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1호관 1층 계단식 강의실
7	9월 23일	제주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 세미나실
8	10월 14일	전남 서부	목포대학교 목포캠퍼스 본관 대회의실 대상지역 : 영광, 무안, 신안, 목포, 영암, 해남, 진도, 완도
9	10월 15일	전남 남부	순천만국제습지센터 대상지역 : 장흥, 고흥, 보성, 순천, 여수, 광양, 강진
10	10월 28일	경북	Best Western 포항호텔
11	10월 29일	경남	경남대학교
12	11월 11일	강원	강원도환동해본부

전문 과정

• 교육과정 소개

교육대상	공무원, 관련업계 종사자 등
필요지식	연안통합관리이론, 계획수립이론, 도면작성기법 등
교육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정비사업 및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입안·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업무역량을 강화 ○ 계획수립에 참여하는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연안관리제도 도입의 배경, 지역특성에 맞는 공법 검토 및 설계기법, 연안관리지역계획 중 용도해역·기능구·자연해안관리 목표수립에 요구되는 기술정보 및 전문지식의 습득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정비기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특성에 적합한 공법 선정 - 연안관리제도 연계 검토 ○ 연안관리지역계획기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용도해역 및 기능구 지정 - 자연해안조사 방법 - 지역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 방법
기대효과	○ 연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을 통한 핵심 능력의 배양

• 연안관리기술교육 일정 (2015년)

차수	일정	장소
1	6월 2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중인 지역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단계 중 관계기관 협의 단계에 있는 시군구지역은 필수 참석
2	7월 29일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중인 지역
3	8월 6일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중인 지역
4	10월 6일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에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가

• 연안정비기술교육 일정 (2015년)

차수	일정	장소
1	7월 22일	서해안 지역 연안시군구 중심 : 인천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2	7월 28일	남해안 지역 연안시군구 중심 : 전남, 경남, 부산, 제주
3	8월 5일	동해안 지역 연안시군구 중심 : 울산, 경북, 강원, 제주
4	10월 7일	연안정비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가

※ 각 일정의 교육내용은 동일하므로 편한 일정을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프로그램

기본 과정

순서	주요내용	교육시간
1	〈연안관리제도 이해〉	14:00~14: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의 특성과 가치 : 연안의 정의, 연안의 특성, 연안의 가치 ○ 연안관리 국내외 동향 : 해외 연안관리 동향, 우리나라 연안관리 역사 ○ 우리나라 연안의 현황 : 사회경제, 자연환경, 연안관리의 현안/문제 ○ 연안관리제도 : 법률의 구조와 주요 정책수단, 연안관리와 planning 	40분
	○ 질의 응답	10분
2	〈바닷가 현황 및 관리방향〉	15:00~15: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수면과 바닷가의 이해 및 관리현황 ○ 바닷가의 이용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수면 매립과 점용·사용 - 바닷가관리 및 자연해안관리목표제 ○ 연안지킴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닷가 및 공유수면의 점검 - 연안관리제도 실천을 위한 협력활동 	40분
	○ 질의 응답	10분
3	〈연안지역 기능 및 가치 회복 (연안의 안전과 가치창조)〉	16:00~16: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연안의 위험 : 기후변화와 연안, 연안의 재해 취약성 ○ 연안재해의 현황 : 연안재해의 종류별 원인과 피해현황(사례를 포함) ○ 연안재해의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적 대응 : 연안정비정책 및 사업, 침식관리구역, 침식모니터링 - 물리적 대응 : 각종 공법의 소개(특징 및 장단점) ○ 안전한 연안을 위한 참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정비시설의 상태 및 효과 모니터링, 재해취약지역 모니터링, 대응사업 추진 시 지역민 의견수렴 등 	40분
	○ 질의 응답	10분
4	〈연안관리의 나아가야할 방향〉	17:00~17: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관리정책의 미래전략 ○ 지속가능한 연안의 모습 	40분
	○ 질의 응답	10분

※ 현장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세부일정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과정 프로그램

• 연안관리기술교육 일정

순서	주요내용	교육시간
1	〈연안관리제도의 이해〉 ○ 연안관리법, 연안통합관리계획	14:00~14:20
		20분
2	〈연안용도해역 및 기능구 지정〉 ○ 연안용도해역 및 기능구 설정 방법 ○ 지역계획 도면작성 및 계획조서 작성	14:20~15:00
		40분
3	〈자연해안조사 방법〉 ○ 현장조사 방법 및 기준 ○ 단위해안 및 현장확인조서 작성	15:10~16:10
		60분
4	〈지역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 방법〉 ○ 사업계획검토 ○ 지역자연해안관리 목표량 산정	16:20~17:15
		45분
5	〈종합토론 및 설문조사〉	17:25~18:00
		35분

• 연안정비기술교육 일정

순서	주요내용	교육시간
1	〈연안관리제도의 이해〉 ○ 연안관리법, 연안통합관리계획	14:00~14:20
		20분
2	〈연안정비시설물 설계기준 I〉	14:20~15:20
		40분
3	〈연안정비시설물 설계기준 II〉	15:30~16:30
		50분
4	〈연안관리제도 연계 검토〉 ○ 연안용도해역제, 자연해안관리목표제	16:40~17:15
		35분
5	〈종합토론 및 설문조사〉	17:25~18:00
		35분

• 교육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10-12 보령빌딩 3층 오피스비즈플라자

연안관리정책 소개

연안이란?

- 바다와 육지가 맞닿아 서로 밀접한 영향을 미치면서 특수한 자원 · 환경시스템을 이루는 공간
 - 해변 · 갯벌 · 만 · 삼각주 등 다양한 모습을 보이며 해양생물 · 철새 등의 산란장과 서식지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항만 · 산업단지 등 사회 · 경제적 중심지로서 도시가 발달하고 인구가 집중되는 공간임

연안통합관리(ICM :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의 개념 및 도입배경

- 바다와 육지를 일체로 파악하여 관리하자는 의미에서 출발, 1972년 제정된 미국의 연안관리법에서 유래
- 연안에서 각종 이용행위가 상충되고 연안자원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연안환경이 훼손됨에 따라 연안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연안을 관리하기 위한 연안통합관리가 대두
- 1992년 리우UN환경회의에서 『의제21(Agenda 21)』을 통하여 연안의 중요성을 천명하고 이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각 연안국에게 적절한 국내조치를 수립 · 추진하도록 권고

- 의제 21(Agenda 21) -

- 해양 및 연안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연안통합관리」라는 혁신적인 패러다임 제시 (제17장 Ocean Charter)
- 연안통합관리 권고 내용
 - 연안통합관리정책 수립 및 법 제도 정비
 - 연안 이용실태 파악, 주요 연안관리 사안에 대한 대책 마련
 - 연안관리계획 및 실행시 사전 예방대책 수립
 - 연안자원 및 환경에 대한 적절한 경제적 평가방법 사업
 - 계획수립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이해당사자 참여장치 마련

• ‘통합’의 의미

- 공간적 통합 : 바다와 바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육지부분을 통합관리
- 수직 · 수평적 통합 : 다양한 이해당사자,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 과학과 정책결정과정의 통합 : 연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최고수준의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이 뒷받침되어야만 연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 가능
- 자원의 보전과 이용 · 개발의 통합 : 자연환경의 보전 또는 이용 · 개발 모두를 고려하여 연안자원의 효율적인 분배 달성
- 세대간의 통합 : 연안자원을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안의 이용 · 개발방안을 도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1992년 리우UN환경회의 「의제21」에서 사용한 개념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s, ESSD)
- 미래세대의 후생과 복지를 희생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세대의 복지를 극대화하는 개발

보전(Conservation), 보존(Preservation) 및 지속가능한 개발

-보전은 보존보다 광의의 개념

-보전은 보존과 보호를 포함, 인류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범위의 자원과 공간의 이용을 허용

- 보전은 인간의 능동적인 자원이용 행위를 필요한 범위내에서 보장
- 보존은 구체적인 물질이나 소규모의 조건 및 상태에 대한 현상유지

-지속가능한 개발은 보존보다는 보전에 가까운 개념

우리나라 연안통합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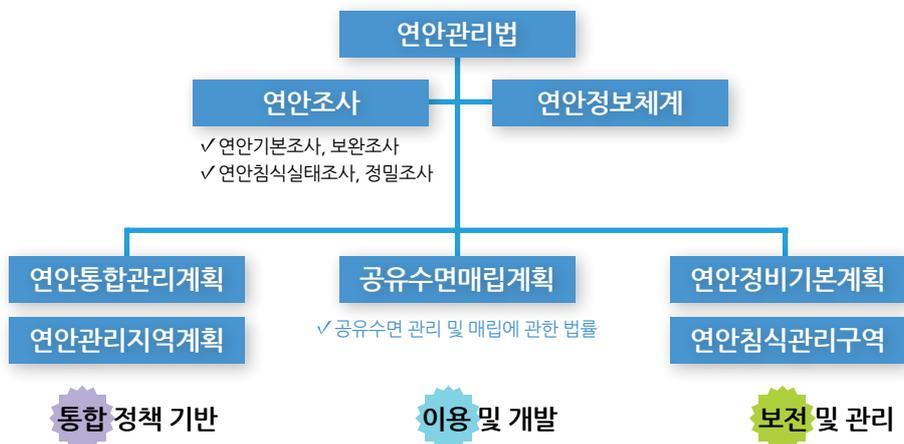
• 우리나라 연안관리의 기본이념

-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고 생태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보전·이용·개발을 할 것
- 연안의 이용 및 개발은 연안환경의 보전과 조화·균형을 이룰 것
- 국민의 연안환경 보전·관리에 대한 정책 참여와 건전한 이용 기회를 늘릴 것
- 기후변화에 따른 해일, 침식 등에 대응하여 바닷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
- 연안통합관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한 협력 및 국제협력을 증진할 것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안관리의 기본이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증진시키고 연안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
- 국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연안환경의 보전 및 개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

• 연안관리(조사·평가·계획)제도 체계



연안통합관리계획

- 근거: 연안관리법 제6조
- 수립시기
 - 제1차 연안통합관리계획 : 2000년
 -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 2011년
- 계획기간 : 2011년 ~ 2020년
- 계획의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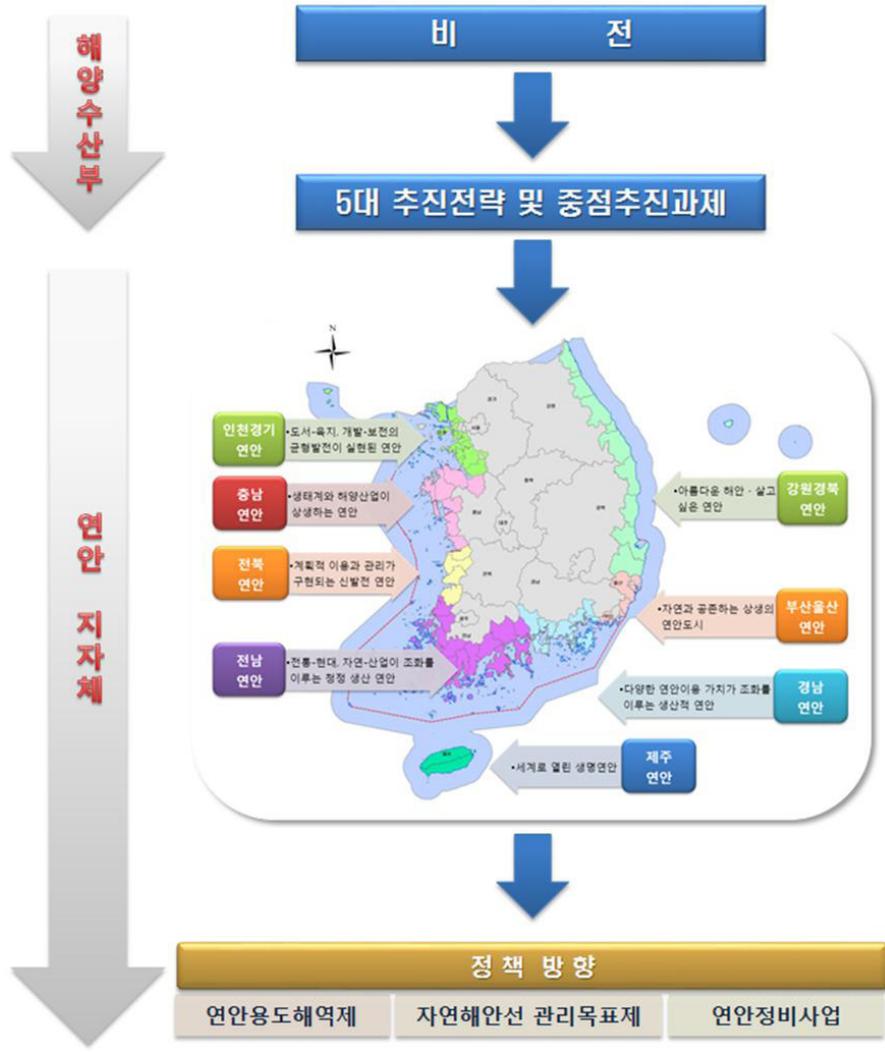
찾고 싶은 에코(ECHO) 연안, 상행과 협력의 해양영토 창조
(ECHO는 생태(ecosystem), 메아리(echo)의 의미와 생태-협력-인간-바다가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복합적으로 함의)

- 연안지역 환경 지속가능성과 녹색경제 실현
- 향유와 정주의 매력이 넘쳐,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연안 실현
- 동반자적 협력으로 상생하는 해양생산 체제 구현

- 계획의 기본목표
 - 생태계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생명연안’ (Eco-based Coast)
 - 참여와 책임으로 함께 가꾸는 ‘협력연안’ (Co-managed Coast)
 - 계획적 관리로 조화를 이루는 ‘통합연안’ (Integrated Coast)
 - 쾌적하고 안전하여 살고 싶은 ‘정주연안’ (Attractive Coast)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과제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신 연안관리제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용도해역제(4개 용도) 및 기능구제(19개 기능구) 시행 •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시행: 자연해안선, 바닷가, 간석지의 총량 관리
생태계 건강성 및 연안경관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 보호구역과 보호대상 생물종 관리 강화로 생물다양성 증진 • 오염원 관리 및 복원사업 강화, 환경수용력을 고려한 이용개발 정착
기후변화 및 재해 대응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육역 공간계획과 연계하여 기후변화 적응형 연안공간관리 시행 • 자연방어체계와 인공방어체계가 조화를 이루는 연안정비사업 발굴 추진
연안 거버넌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및 계획 수립/시행 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협력 제도화 • 연안관리 남북교류 활성화 및 동아시아 연안관리 허브 구축
연안관리 실행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재·공유재로서 공유수면의 공공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개선 • 연안통합관리 실행력 확보를 위한 4대 대책 시행에 집중 투자



구분	제1차 통합계획	제2차 연안통합계획
미래상	생명 · 생산 · 생산의 장으로 연안 재창조	찾고 싶은 에코(ECHO) 연안 상생과 협력의 해양영토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적 균형을 이루는 생명연안 · 환경친화적 개발을 통한 생산연안 · 연안재해방지사업을 통한 재해 없는 연안 · 위락과 교육의 장으로서의 인간중심연안 · 이해관계자가 협력하는 통합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 관리로 조화를 이루는 '통합연안' · 생태계 가치를 유지 · 증진하는 '생명연안' · 쾌적하고 안전하여 살고 싶은 '정주연안' · 참여와 책임으로 함께 가꾸는 '협력연안'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연안생태계 집중관리 · 해역별 특성에 맞는 연안오염부하 적정관리 · 환경용량을 고려한 연안개발계획의 조정 · 연안재해방지사업의 체계적 전개 · 친수연안공간 조성 및 연안접근권 개선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촉진 및 지원 · 전국 연안의 권역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 연안관리제도 적용 · 생태계 건강성 및 연안경관 증진 · 기후변화 및 재해 대응 강화 · 연안 거버넌스 구축 · 연안관리 실행력 강화

연안관리지역계획

- **근거** : 연안관리법 제8조

- **계획 수립 목적** : 연안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 개발을 도모

- **계획의 성격**

- 관할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 · 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권역별 연안의 특성에 따라 통합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연안 관리의 기본목표와 정책방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실천방향을 정하는 계획
- 자치단체의 관할 연안구역 전체 또는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며, 통합계획의 취지를 반영하여 지역별 연안관리의 기본목표와 정책방향을 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정하는 계획
-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지방 및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합의에 의하여 수립되는 계획

- **수립주체**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구 · 구청장 : 관할 연안에 대하여 수립
- 시 · 도지사 : 관할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통합계획의 범위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자치구)에 걸쳐 지역계획을 수립 가능

- **공간적 범위**

- 연안해역과 통합계획에서 정하는 연안육역을 대상으로 수립
- 연안해역 : 바닷가(약최고고조면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와 바다(약최고고조면으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의 사이)
- 연안육역 : 무인도서 및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항만, 국가어항,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킬로미터) 범위안의 육지지역(하천구역은 제외)으로서 통합계획에서 정한 범위(연안관리지역 계획에서 별도로 연안육역의 범위를 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연안육역으로 간주)

- **시간 범위** : 매 10년 마다 수립, 5년 마다 재검토

- **수립절차**

- 지역계획의 수립주체(광역시장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가 지역계획안을 작성
-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
-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거쳐 해양수산부 장관이 승인

• 지역계획의 내용

- 지역계획의 개요
- 관할 연안의 범위 및 계획수립 대상연안
- 관할 연안의 여건 및 전망
- 관할 연안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및 관리방안
- 연안침식관리구역의 관리 방향
- 자연해안관리목표의 설정 및 관리방안
- 연안관리에 대한 세부추진사항
- 관할 연안의 연안정비사업 방향

• 지역계획의 구성

구분		세부내용	방법
연안 관련 법률 및 계획 검토		- 연안관련 법률 및 조례 - 도시기본계획,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해양환경관리 종합계획등	- 관련법률 및 조례 검토 - 관련 상위계획 검토 - 관련 부서자료 분석과 협의
연안관리 여건분석 및 전망	연안 현황 및 수요 조사	- 연안 자연환경 현황 - 연안 이용·개발 현황 및 수요 - 연안의 보전 현황 및 수요	- 국내 통계자료, 연구보고서 등 문헌조사 - 전문가 자문 - 지역주민 면담 및 현지답사 - GIS 분석
	연안관리 여건 및 전망 분석	- 연안환경·생태계 부문 - 연안이용·개발부문 - 기후변화 및 연안재해 대응 부문 - 연안 거버넌스 부문	- 연안지킴이 지역간담회 - 관련 부서 협의
연안관리 기본방향 설정		- 연안관리 기본목표 설정 - 연안관리 추진전략 도출	- 통합계획에서 제시한 추진전략 반영
신 연안관리제도 적용	계획대상연안,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	- 계획 대상 연안 - 4개 연안용도해역 - 19개 연안해역기능구	- 현지답사 및 GIS 분석 - 관련 부서 협의 - 지역설명회 및 공청회 의견수렴
	자연해안관리 목표 설정 및 관리방안	- 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 및 관리방안	
연안관리에 필요한 세부 추진 사항 제시		- 생태계 건강성 및 연안경관 증진 - 기후변화 및 연안재해 대응 강화 - 연안거버넌스 구축 - 연안관리 실행력 강화	- 관련 부서 협의 - 지역설명회 및 공청회 의견수렴
지역계획관리방안		- 주기적 점검 및 자체평가	

연안용도해역제

• 연안용도해역제의 개요

- 연안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용도를 미리 정하고 정해진 용도의 취지에 부합되는 관리방안을 설정하여 예측가능하고 균형과 조화를 통한 연안관리를 실현하는 제도
 - 연안개발 · 이용수요를 고려한 계획적 해역공간관리제도 확보
 - 연안개발 · 이용 공공갈등의 합리적 조정체계 구축
 - 해양생태계 및 환경보전 수단 확보
 - 해역공간관리의 실효적 관리수단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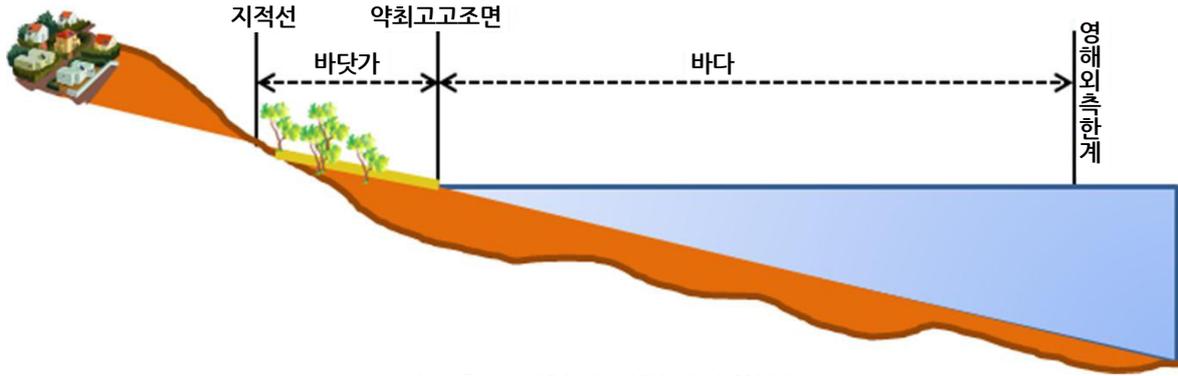
• 근거: 연안관리법 제15조

- 2010년 연안관리법 개정을 통해 신 연안관리제도의 일환으로 최초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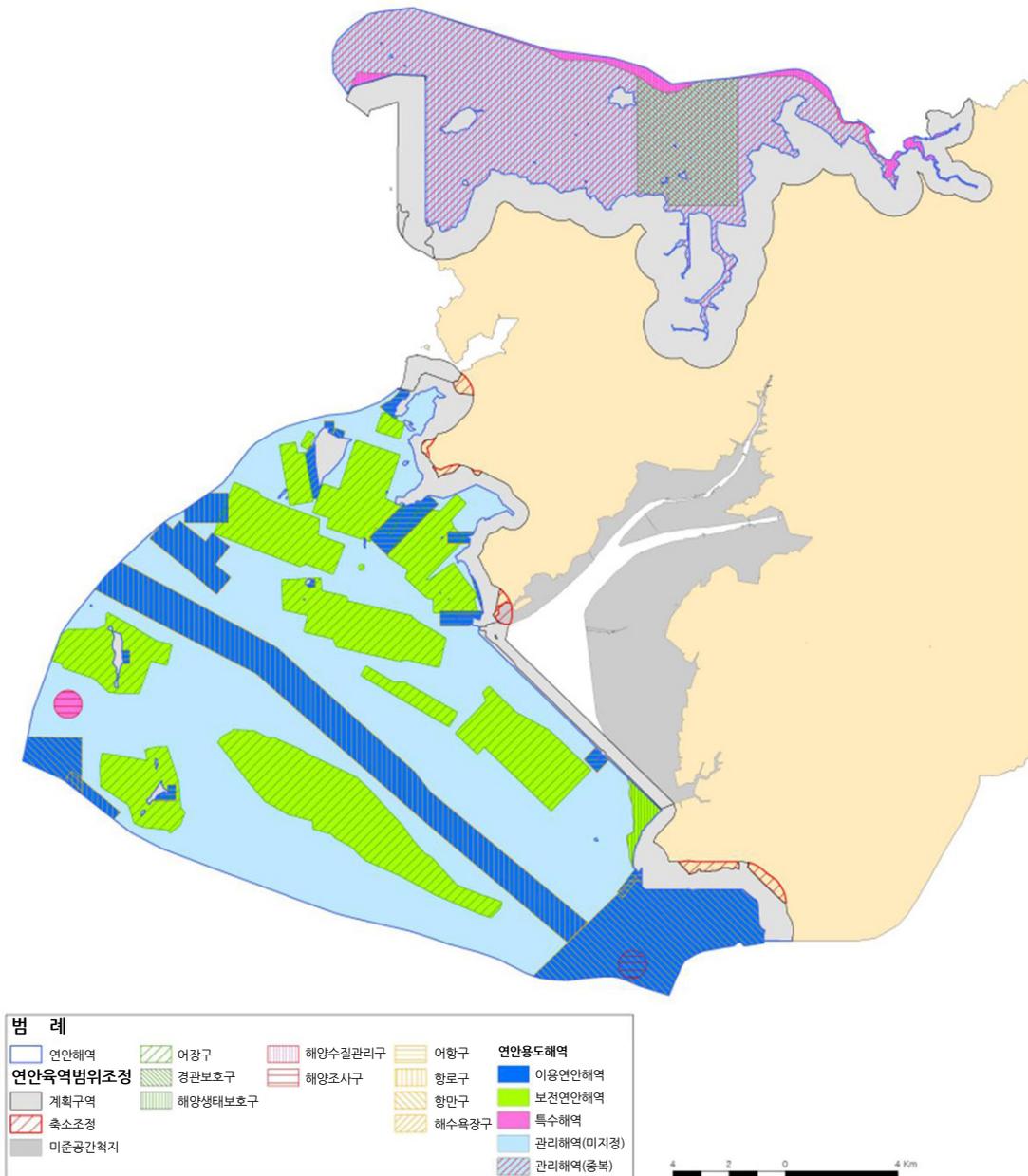
• 용도해역지정 기준 및 정의

- (연안용도해역) 연안해역의 효율적인 보전 · 이용 및 개발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용도를 미리 정하여 중복되지 아니하게 연안관리지역계획으로 결정하는 연안해역(연안해역기능구 고려)
- (연안해역기능구) 연안용도해역의 기능을 증진·보완하고 연안해역을 합리적으로 보전·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이용 상태 및 기능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으로 결정하는 연안해역

연안용도해역	지정 기준/연안해역기능구	
이용연안 해역	연안해역 기능구	연안해역 중 이용 또는 개발이 확정되어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으로써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개발행위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해역 항만구, 항로구, 어항구, 레저관광구, 해수욕장구, 광물자원구, 해중 문화시설구
특수연안 해역	연안해역 기능구	군사시설 및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해역, 해양의 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해역 등 해양수질관리구, 해양조사구, 재해관리구, 군시시설구, 산업시설구, 해양환경복원구
보전연안 해역	연안해역 기능구	연안환경 및 자원의 보호, 해양문화의 보전 등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해역 수산생물자원보호구, 해양생태보호구, 경관보호구, 공원구, 어장구, 해양문화자원보존구
관리연안 해역	연안해역 기능구	상기 연안용도해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에 해당되어 용도 구분이 곤란한 해역 연안해역기능구 우선순위 결정



〈연안용도해역제 지정대상 범위〉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 지정 예〉

연안정비기본계획

- 근거 : 연안관리법 제21조
- 계획수립의 목적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위하여 10년마다 수립
- 계획수립의 주체 : 해양수산부 장관
- 기본계획 수립 경과
 - 제1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00~2009) : 631개 지구, 7,823억원
 -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10~2019) : 370개 지구, 19,844억원
-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연안정비사업의 추진방향, 연안정비사업의 중장기계획, 연안정비사업의 연도별 내용 및 추진계획
- 연안정비사업 : 연안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 연안정비사업의 종류
 - (연안보전사업) 해일(海溢), 파랑(波浪), 해수 또는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는 사업, 연안을 보전 또는 개선하는 사업
 - (친수공간조성사업) 국민이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親水空間)을 조성하는 사업

연안보전사업 대상사업

- 태풍 등의 영향으로 붕괴되었거나 유실되어 복구가 필요한 사업
- 노후하거나 불량한 시설의 대체를 위한 개축, 증축, 신설하는 사업
- 재해발생 빈도가 높고 침수 등 피해가 많은 지역에 대한 보수·보강 사업
- 기타 재해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연안시설물 정비사업

친수공간 조성사업 대상사업

- 연안의 지리적 여건상 친수연안의 조성이 바람직한 사업
(해안정비, 해안환경의 정비에 수반되는 친수연안 조성사업)
- 연안경관 보전 및 시민의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해변공원, 해변산책로, 기타 친수 레크리에이션 공간시설)

- 연안정비사업의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에서의 시행
 -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
 -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업
 - 둘 이상의 광역시·도에 걸쳐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 관리구역 내의 사업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는 사업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항만구역 외의 연안에 대한 시행

● 연안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절차



● 추진현황

구분	사업량 기준(개소)		사업비 기준(억원)	
	기본계획	추진현황	기본계획	추진현황
제1차 기본계획	631	281	7,823	4,334
제2차 기본계획	370	166	19,844	3,902

연안기본조사

- **근거**: 연안관리법 제5조

- 2010년 연안관리법 개정에 따라 연안실태조사에서 연안기본조사로 명칭 변경

- **기본조사 개요**

- 조사주체: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조사목적: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를 수집
- 조사의 종류 및 주기
 - 정기조사: 5년 마다 연안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 실시
 - 자연해안, 바닷가 조사측량: 10년마다 실시
 - 보완조사: 정기조사 결과 연안환경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실시
 - 연안침식 실태조사: 매년 실시하고, 연안정비사업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

- **조사현황**

- 연안실태조사: 1996년 ~ 1998년(연안관리법 제정을 위한 조사 목적)
- 제1차 연안실태조사: 2002년 ~ 2004년(제1차: 서해안, 제2차 남동해안)
- 제2차 연안실태조사: 2009년
- 연안기본조사: 2014년 ~ 2015년

- **정기조사 주요내용**

- 자연환경 실태: 해안선, 지형, 수심, 기온, 조석(潮汐), 조류(潮流), 수온, 퇴적물, 생태계 등
- 사회·경제적 실태: 인구, 고용, 지역경제 등
- 자원 이용 실태: 항만, 수산자원, 관광자원, 광물자원 및 간척·매립 등
- 해양환경 오염 실태: 연안수질 오염, 해양퇴적물 오염 등 해양환경 오염 실태
- 시설물 실태: 연안보전시설, 친수시설 등
- 연안재해 위험 및 피해 실태: 연안침수, 재해취약성 등 연안재해 위험 및 피해 실태

- **보완조사 주요내용**

- 연안환경 변화의 발생 원인, 변화 정도 및 변화 양상
- 연안환경의 변화가 연안에 미치는 영향
-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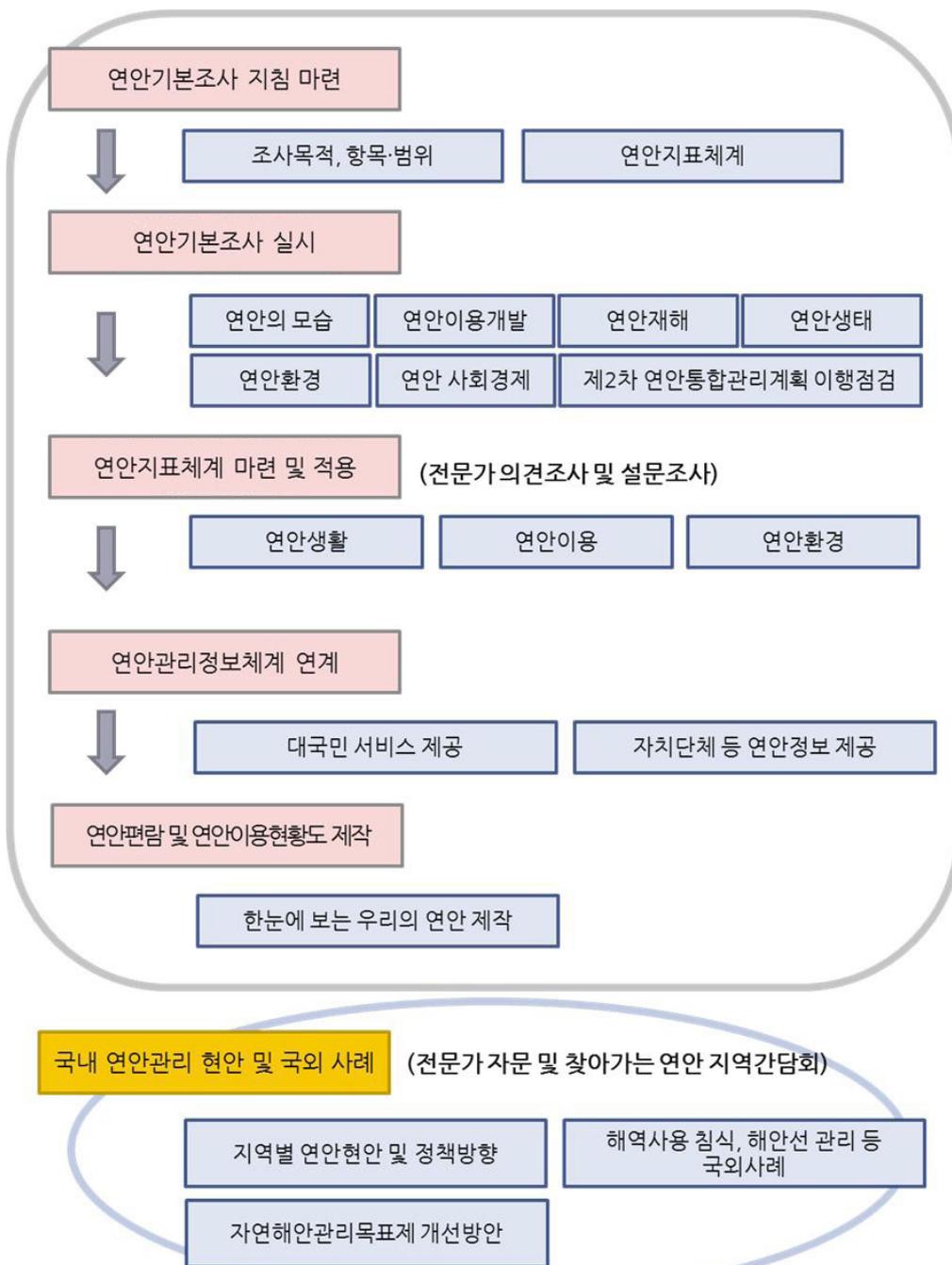
- **연안기본조사**

- 해빈(海濱)의 폭·면적·고도, 입도(粒度) 등 연안의 형질 변화
- 연안의 이용·개발 현황 및 계획
- 연안침식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 연안기본조사 정밀조사

- 자연환경 실태 : 해안선, 지형, 수심, 기온, 조석(潮汐), 조류(潮流), 수온, 퇴적물, 생태계 등
- 자원 이용 실태 : 항만, 수산자원, 관광자원, 광물자원 및 간척·매립 등
- 시설물 실태 : 연안보전시설, 친수시설 등
- 연안정비사업이 연안환경에 미치는 영향

• 연안기본조사 조사 및 추진체계



연안침식 실태조사

• 목적

- 침식 현황 파악 및 과학적 기초자료 확보
- 연안침식에 대한 사전적 대응과 연안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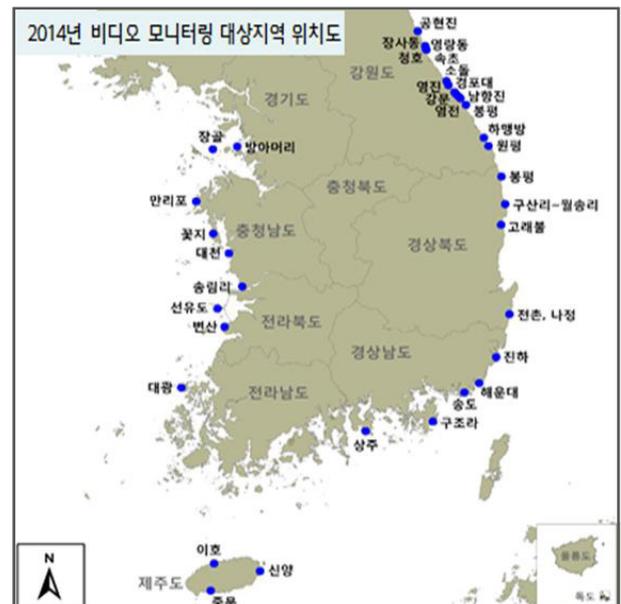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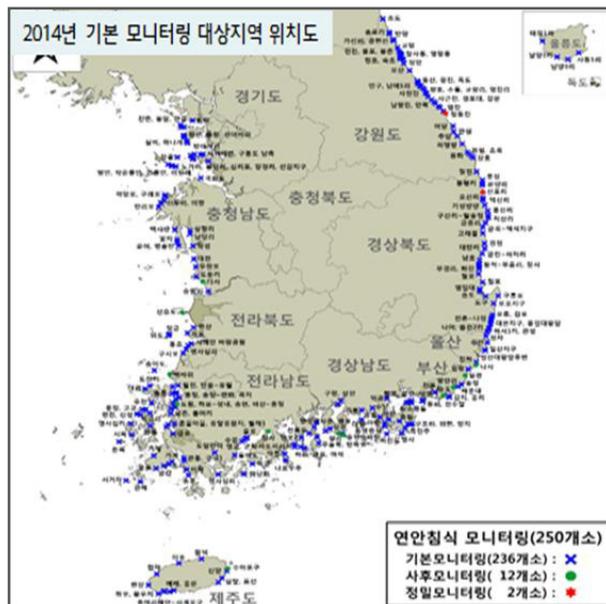
• 모니터링 방법

- 2003년 연안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작

구분	조사내용	조사방법
기본 모니터링	-대상지역 : 침식등급 A(양호), B(보통), C(우려)지역 -침식이력조사, 표층퇴적물조사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 분석 -간이해빈단면측량
중점 모니터링	-대상지역 : 침식등급 D(심각)지역 -기본 모니터링 항목 포함	-정밀해빈단면 및 해안선 측량 -정밀수심측량(수심 0~25m)
비디오 모니터링	-대상지역 : 침식심각지역 및 광역지자체별 주요 해안 -해빈폭 및 면적 변화 파악	-지상기준점(GCP) 측량
파랑 모니터링	-대상지역 : 침식원인분석 등 외력자료 필요 해안 -침식원인 규명 및 구조물 설계 등 활용	-주요 연안 파랑관측

• 추진현황

연도	2003	2007	2010	2011	2012	2013	2014
기본	62	120	157	160	172	225	250
비디오	2	23	24	26	27	27	35



〈연안침식 실태조사 위치〉

• 실태조사 침식등급 결과(2014년 기준)

지자체별	지자체별	지자체별				침식우심지역 (C, D등급/총개소)
		A	B	C	D	
전국	250	10	131	94	15	43.6%
부산광역시	11	-	7	4	-	36.4%
울산광역시	6	-	2	4	-	66.7%
인천광역시	18	-	10	8	-	44.4%
경기도	5	-	3	2	-	40.0%
충청남도	17	2	11	4	-	23.5%
전라북도	9	1	5	3	-	33.3%
전라남도	63	4	41	18	-	28.6%
경상남도	26	2	18	6	-	23.1%
강원도	41	-	10	19	12	75.6%
경상북도	41	1	16	21	3	58.5%
제주특별자치도	13	-	8	5	-	38.5%

• 실태조사 결과의 활용

- 체계적 연안관리를 위한 연안침식 등급평가 및 관리
- 대상지역, 우선순위 선정 등 연안정비기본계획 수립 활용
- 지자체 연안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연안침식관리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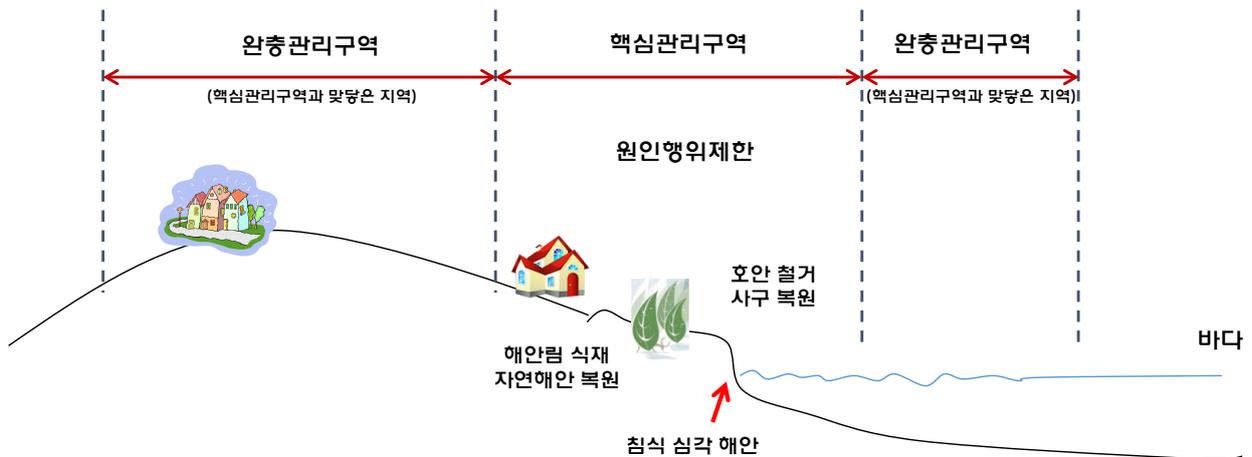
• 제도 도입 배경

- 기후변화, 누적된 해안권 난개발 등으로 연안침식이 가속화되어 연안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 피해가 급증
- 그간 연안해역에 국한된 연안관리의 실효성 확보 및 사전예방적 침식관리제도 구축 필요

• 근거: 연안관리법 제20조의2

• 제도 개요

- 침식이 우려되거나 진행중인 연안을 관리구역(핵심관리구역, 완충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침식위험 감소시 지정해제)
- 관리구역 내에서는 행위제한(인공구조물 설치, 바다모래 채취 금지 등), 연안정비사업 우선시행을 통해 관리 실효성 확보
 - 핵심관리구역: 연안침식이 빠르게 진행 중이거나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
 - 완충관리구역: 핵심관리구역과 맞닿은 지역 등으로서 핵심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 연안침식관리구역 관리계획 수립

- (수립권자) 해양수산부장관
- (주요내용) ① 관리구역 내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 실태조사, ② 관리구역 내 침식원인 및 피해조사, ③ 관리구역 내 침식방지 및 복구대책, ④ 핵심관리구역과 완충관리구역의 구분에 관한 사항, ⑤ 관리구역 주변지역의 이용 및 개발 실태, ⑥ 그 밖에 관리구역 내 침식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연안의 이용·보전 또는 관리에 관한 행위 시 관리계획 준수 의무부과

• 지정현황(2015년 기준)

- 3개소 : 맹방해변(강원 삼척시), 봉평해변(경북 울진군), 대광해변(전남 신안군)

바닷가종합관리계획

• 계획수립 배경

- 공공의 자산이자 공유수면의 일부인 바닷가에 대한 무단 점용·사용 및 무분별한 토지등록이 빈발하여 이를 근절하고 체계적인 바닷가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수립

• 계획의 주요 내용

- 바닷가 실태조사(지적측량 및 바닷가 모니터링)
- 바닷가 유형분류 및 관리체계 구축
- 연안완충구역 지정·관리
- 주기적 교육 및 상시점검 체계구축

• 바닷가 실태조사 실시

- 2011년 ~ 2014년 : 육지부 실태조사 완료
- 2015년 ~ 계속 : 도서부 실태조사 수행 중
- 바닷가 현황(2014년 말 기준)

구분	자연바닷가	이용바닷가	합계
개소	1,788	3,702	5,490
면적(m ²)	11,072,254	10,225,241	21,297,495

• 바닷가 유형별 관리체계 구축(바닷가 관리지침 제정 시행)

- 바닷가 유형구분 : 자연바닷가, 이용바닷가
- 유형별 차별화된 관리
 - 자연바닷가 : 연안완충구역의 대상으로 보전을 원칙으로 관리
 - 이용바닷가 : 발생원인과 주변상황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합법적 이용을 유도, 토지등록이 가능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면제 여부 검토 후 국유재산법에 따라 무주부동산 공고 등 절차를 거쳐 국유지로 관리

• 연안완충구역 지정/관리

- (정의) 파랑·해일·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의 생태·문화·경제적 가치를 유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존이 필요한 바닷가
- (제도개요) 연안을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게 보전·이용하며,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해일, 침식 등에 대응하여 바닷가를 효율적으로 관리
 - 바닷가는 파랑과 강풍, 해일 등에 의해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지적을 나누고 소유권을 부여하기 곤란
 - 침식, 포락 등 연안의 지형변화를 완충할 수 있도록 지적등록을 최소화하고 연안정비 등의 관리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 지정대상

- ① 바다와 육지의 전이지역으로 연안의 독특한 생태적 특징, 환경적 가치, 뛰어난 해안경관을 가진 바닷가
- ② 연안재해를 저감할 수 있는 해안사구나 해안림이 분포하는 바닷가 및 이를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주변지역
- ③ 해수면 상승이나 해양환경의 변화 등으로 연안침식이나 범람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나타나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바닷가
- ④ 해수면 상승이나 기후변화 등에 따른 연안재해에 대한 취약성 평가 결과 연안육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토지등록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바닷가

- (관리의 원칙과 방향) 구역 지정을 통해 연안재해를 예방하고 연안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함을 우선적인 관리의 목표로 선정

• 기대효과

- 안전한 연안

▶ 연안재해(태풍,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지진해일, 해무 및 해양의 자연현상 기인) 완충 효과
- 살아있는 연안

▶ 해안사구와 해안림을 보호함으로써 사구동식물의 서식지를 제공하고 어부림(漁付林) 기능 강화
- 쾌적한 연안

▶ 자연성이 살아 있는 해안 경관을 제공하여 해안길로 활용하고, 여름철 해수욕장 배후 휴양공간 제공

• 관리내용

주요 내용	관리 사항
생태적 가치에 기반한 예방적 관리	연안완충구역 지정을 통해 연안재해를 예방하고 연안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할 수 있도록 관리
연안정비사업의 시행	연안완충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연안정비사업 및 해안사구나 해안림 등을 조성하거나 양빈 사업을 시행
시설물 설치	연안완충구역에서는 의자, 산책로, 안내판 등 일시적으로 이용하거나 연안완충구역을 알리는 시설물 등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치
바닷가의 토지등록	연안완충구역 내 바닷가의 국유지 등록은 최소한의 범위내로 제한하고 연안재해를 저감할 수 있는 대응조치 강구

• 연안완충구역 지정 현황(2014년 기준)

- 도구지구(경북 포항), 문암지구(강원 고성), 다사2지구(충남 서천) 3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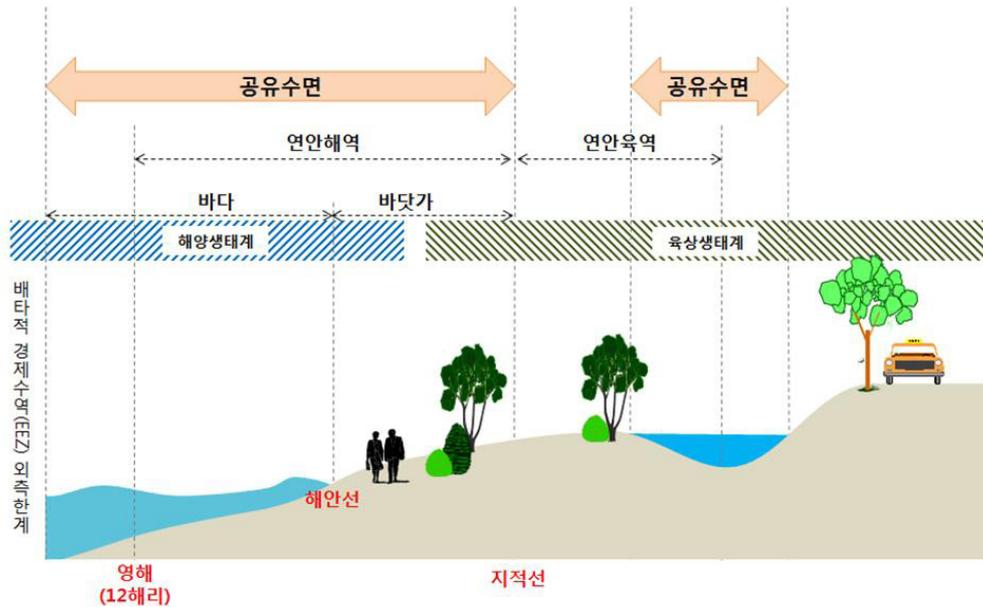
• 주기적 교육 및 상시점검

- (불법행위 점검·개선) 지역별, 이용형태별 바닷가 상시 점검을 통해 매년 불법사항 15% 개선을 추진 하여 불법이용 근절 도모
- (바닷가 모니터링 실시) 바닷가 실태조사가 완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안선을 변화시킨 인공구조물의 설치 및 매립지 이용형태 변화 등에 대해 항공영상과 인공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원격모니터링 실시
- (주기적 교육) 공유수면관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바닷가종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제도에 대한 교육 실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 공유수면의 정의 및 개념

- (사전적 개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소유로 공공의 이익에 제공되는 수면 (바다·강·하천 따위)
- (법률적 정의) “바다, 바닷가, 하천·호소·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으로 정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 점용·사용 허가

- 원상회복을 전제로 일정기간 동안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은 관리청(지방해양수산청, 시·군·구)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는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함
- 점용·사용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점용·사용료를 관리청에 매년 납부하여야 함

• 점용·사용의 절차



• 점용 · 사용의 종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 ①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 ②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掘鑿)하는 행위
- ③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浚渫)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 ⑤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⑥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 ⑦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 ⑧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水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⑨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 · 사용하는 행위
- ⑩ 공유수면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 ⑪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 · 사용하는 행위

주: 건축물이란 공유수면 또는 공유수면 밑의 지하에 설치되거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중 항만 및 어항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관광숙박업에 필요한 건축물, 연안통합관리계획 · 연안관리지역계획 · 연안정비사업계획에 적합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신 · 재생에너지시설 중 풍력 설비, 송전선로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함.

• 원상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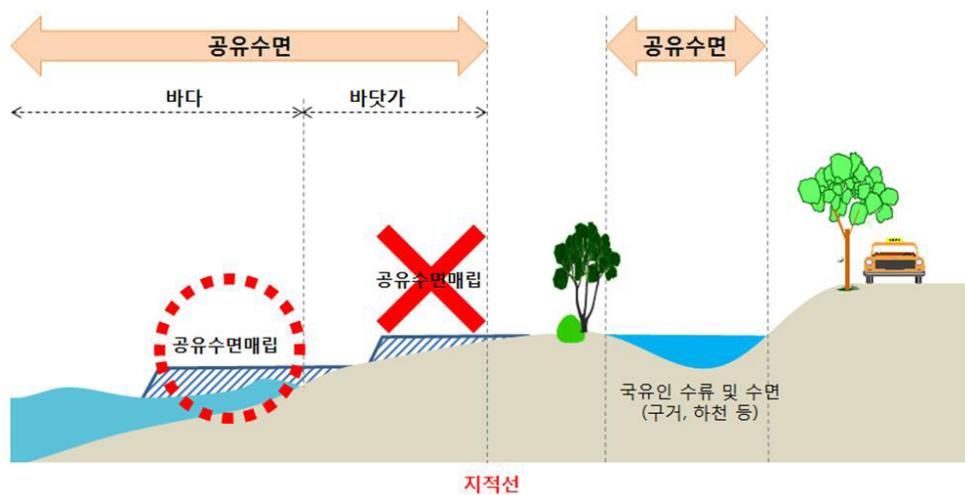
- 공유수면의 점용 · 사용은 기본적으로 원상회복을 전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점용 · 사용자가 자기의 책임으로 원상회복해야 함. 다만, 점용 · 사용허가를 받은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한 경우나 관리청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승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점용 · 사용의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 · 사용한 경우
 - 점용 · 사용의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 · 사용한 경우
 - 점용 · 사용기간이 끝난 경우
 - 점용 · 사용의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과 관계있는 사업이 폐지된 경우
 - 공유수면의 점용 · 사용의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이 취소된 경우
-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청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 조치를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점용 · 사용자로부터 징수함

-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관리청의 승인을 얻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시설물·흙·돌, 그 밖의 물건(원상회복 대상물)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 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 공유수면매립의 개념

-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



- 근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 계획의 개요

- (수립주체) 해양수산부장관
- (수립목적)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매립·관리하기 위하여 수립
- (수립주기) 10년 마다(5년 마다 타당성 재검토)

• 계획 수립 현황

- 1986.12.31. :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제도 신설
- 1991. 2. 4. : 제1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 (430건, 1,867km²)
- 2001. 7. 6. :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 (374건, 80km²)
- 2011. 7.29. : 제3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 (53건, 2km²)

• **매립목적 변경 제한**

- 매립지는 준공검사일부터 일정기간 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매립목적 변경 제한 기한
 - 1986.12.31.~1999.2.8.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 5년
 - 1999.2.8. 이후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는 10년

• **공유수면매립 절차**



•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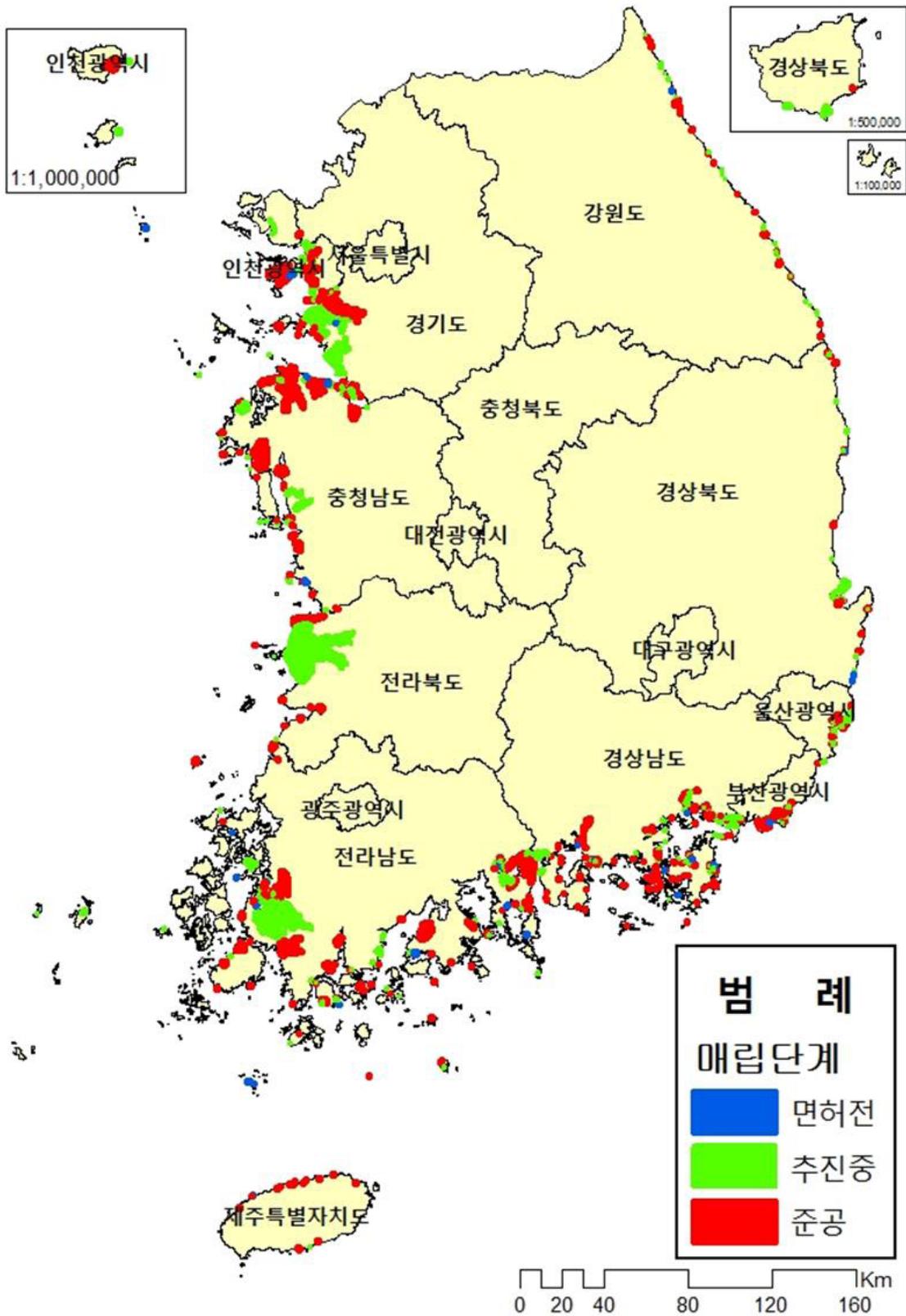
- 정의 및 특징
 -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천㎡ 이하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매립기본 계획에 관계없이 시행할 수 있는 공유수면매립
 - 사업시행연도에 관계없이 인접한 지역에서 매립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의 규모의 합이 1천㎡를 초과해서는 안됨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해안도로(양식장 진입로 포함) 건설 · 수산물 처리 등을 위한 공동작업장 건설
- 하수중계펌프장 건설 · 재해 복구 및 예방 사업 · 연안정비사업

- 법적 근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 영 제46조
- 사업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광역시, 특별자치도, 도, 시, 군, 구)
- 협의 또는 승인 절차





<공유수면매립지 분포도>

